

○ 處罰과 保安處分の 要件

- 現行

第11條 第1項

① 모든 국민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.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·拘禁·押收·搜索·審問·處罰과 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하며,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強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.

- 民正黨案

現行과 같음

- 民主黨案

① 모든 국민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.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·拘束·押收·搜索·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, 保安處分, 強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.

○ 處罰은 刑의 宣告에만 의하도록 함은 不可함

— 處罰은 原則적으로 刑의 宣告에 의함

— 그러나 가벼운 具權刑은 法律이 정한 簡易節次에 따라 終結함이 國民에게 便利하고 得이 될

• 稅務署長·稅關長의 財政罰에 대한 通告處分

• 警察署長의 交通事犯에 대한 通告處分

— 國民이 원하는 경우 正式裁判 받을 수 있으므로 國民의 實質的 權利保障이 不합

○ 保安處分

— 모든 保安處分에 대하여 法院의 判決을 요하게 할 경우 保安處分 本來의 目的 達成不可
오히려 國民의 生命·身體·具權에 대한 보호 미흡
결과 존재

— 마약 중독자·유락행위 승습자·정신병자등에 대한 保安處分은 法院의 判決에 의함이 不適當함

— 外國의 立法例도 常習犯(우리의 경우 社會保
護法)등에 대한 拘禁受容은 法院의 宣告에
의하나 國事犯·알콜중독자·부랑아등의 경우는
行政機關이나 準司法的 行政委員會의 決定에
의하고 있음